

2021년 한국아동증심실천학회 준계학술대회

##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영유아 증심의 의미

- ▷일 시 : 2021년 6월 11일 (금) 13:30~17:30
- ▷장 소 : 온라인 ZOOM 강의

주최: 한국아동증심실천학회  
후원: (사)에듀케어아카데미

## |2021년도 순계예술대의 일정보|

일정	발표 및 내용	비고
13:00-13:30	등록	
13:30-13:40	개회 및 국민의례	: 유현정 교수 (신구대학교 아동보육과)
	개회사	회장 : 안지혜 교수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13:40-14:20	기조강연 '아동중심의 의미와 실천 현장의 목소리'	강연 : 서영숙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14:20-14:30	휴식	
14:30-15:10	주제발표1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 1	발표 : 김영명 원장 (서강어린이집)
15:10-15:50	주제발표2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 2	발표 : 남미선 원장 (백송어린이집)
15:50-16:00	휴식	
16:00-16:30	토론	좌장 : 서혜전 교수 (대구한의대 아동복지학과)
16:30~16:5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토론 : 이남정 센터장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16:50~17:00	폐회	토론 : 이유미 교수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17:00~	연구윤리	이유미 교수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 목 차

## [개회사]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장 안지혜(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4

## [기조강연]

아동중심의 의미와 실천 현장의 목소리

서영숙(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5

## Ⅱ주제발표

### [주제발표1]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1

김영명(서강어린이집 원장) ..... 20

### [주제발표2]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2

남미선(백송어린이집 원장) .....21

## Ⅲ종합토론

### [토론문1]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에 대한 토론

이남정(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2

### [토론문2]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에 대한 토론

이유미(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28

[연구윤리] ..... 36

# 인사말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장 안 지 혜  
목포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2021년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여해주신 학회회원과 참가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는 구)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로 시작하여 2021년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아동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권리로서 인식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힘을 쏟고자 합니다.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영유아 중심의 의미”라는 주제로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7월에 고시되어 2020년 3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2019개정누리과정」, 2020년 4월 고시되어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4차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보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학계와 현장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영유아 중심의 의미를 성찰해보고 실천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며 인식개선과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영유아중심’이라는 관점을 공유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지고 연구분야와 영유아와 함께 하는 보육현장의 실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6.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장 안지혜

## 기초강연

# 아동중심의 의미와 실천 연장의 목소리

서 영 속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2021.6.11 아동중심 실천학회 춘계 학술대회 기조발표

## 제4차 표준보육과정 아동중심·놀이중심의 의미와 실천 관련 질문들

서영숙

한국장난감도서관협회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명예교수  
(사)에듀케어 어린이교육문화연구소 고문



## 차 례

1. 아동중심의 다양한 맥락과 해석
2.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과 개정 배경
3.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실천 관련 질문들
4. 맺으며

### 1. 아동중심의 다양한 맥락과 해석

- 1.1 사전적 의미에서의 아동중심
- 1.2 가정에서의 아동중심
- 1.3 사회적 인식과 문화에서의 아동중심
- 1.4 도시행정과 정책에서의 아동중심:  
아동친화도시
- 1.5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아동중심

## 1.1 사전적 의미에서의 아동중심

### • 사전적 정의

- 한가운데, 복판,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안, 속을 뜻한다(네이버 사전).
- 아동중심을 사전적 의미와 연결하여 보면 아동을 한가운데, 복판에 두는 것, 아동을 중요하고 기본적인 존재로 보는 것, 아동의 안, 속 즉 아동의 마음에 유의하는 것 등으로 풀어볼 수 있다.
- 아동을 한가운데 둔다는 의미의 아동중심
  - 그만큼 중요하게 받드는 것, 또는 가장 취약하므로 잘 보호하려고 가운데 두는 것? 마치 남극의 펭귄들이 추위를 견디느라 동글게 모여 서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란 의미의 아동중심
  - 아동을 사회나 국가의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존재로 본다는 것, 아동의 요구나 흥미를 어른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먼저 파악하여 맞추라는 것으로도 해석
- 아동의 안, 속이란 의미의 아동중심
  - 아동의 겉모습, 즉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속, 즉 마음, 동기, 흥미 등을 챙기라는 것으로 해석 가능

## 1.2 가정에서의 아동중심

- 양육태도 분류: 자녀중심적(억애적), 민주적(허용적), 방임형, 거부형(가부장적)
  - 자녀중심형(아동중심): 자녀의 기를 살려주려고
  - => 버릇없는 : 자주적인, 자기 생각을 가진, 개성있는...
  - 부모중심형: 부모는 권위가 있어야
  - => 눈치보는, 위축되고 불안한 : 배려심있는, 겸손한,
  - 아동중심이란 양가적, 또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 단어
- 가정의 중심은 누구인가?
  - 가정의 주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정의 주 의사결정자?
  - 부모 중심이라 해도 자녀를 우선 고려하여 판단
- 가정에서 공간사용: 크기 및 위치와 사용자와의 관계
  - 부모중심? 자녀중심?
  - 방의 상징적 의미와 효용성 사이의 선택

### 1.3 사회적 인식과 문화에서의 아동중심

- **사회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상징**
  - 공원이나 주택단지에서 어린이놀이터나 어린이집의 위치와 크기와의 관계?
  - 접근성과 경관이 좋은 곳, 별이 잘 드는 곳에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을
  - 아동에 대한 가치 부여와 실질적 가치 구현과의 괴리
- **레지오 에밀리아 시의 어린이집 위치**
  - 접근성, 자연환경이 좋은 공원 등에 위치
  - 지역사회 애정과 관심의 중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 부모로서 뿐 아니라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
  - 자연스런 幼老세대간 연결(link generation)
- **아파트 선전에 등장하는 구호**
  - 자녀키우기 좋은 아파트 : 어린이가 살기(놀이) 좋은 아파트

### 1.4 도시 행정과 정책에서의 아동중심

- **아동중심 행정: 아동친화도시**
  - 아동 권리가 충족되도록 기반 시설과 설비, 서비스 제공,
  - 아동관련 정책 제정에 아동 의견 청취로 아동의 정책참여권 보장
  - 가령 놀이터 설치 초기부터 아동의 의견을 들어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며, 운영을 함께 하기도 함
- **2021.4.20 화성시<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
  -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단체협의회와의 협약식
  - 서철모 화성시장: '아동이 살기좋은 도시가 정주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며 밝고 건강하다. **아동중심의 정책**이야말로 도시가 사는 길이다.' "아이가 원하는,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 중심의 행정**을 펼쳐 화성시의 미래가 보다 밝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힘
- **아동중심 행정은 어른의 적극적인 공감과 아동 존중, 지지와 지원 속에 이루어지는 것**



## 1.5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아동중심

-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
  - 비차별, - 아동 최선의 이익, - 생존과 발달의 권리, - 아동 의견 존중
- 영유아보육법 제3조(보육이념)(2005)
  -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방정환 선생님의 어른에게 드리는 글(1927)
  1.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세요
  2.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하여 주세요
  3.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되 늘 보드랍게 하여주세요
  4. 이발이나 목욕·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시오
  5.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하게 하게 하여주세요
  6. 산보와 원작(소풍) 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주세요
  7.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세요
  8. 어린이들이 서로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계 같은것을 지어주세요
  9.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에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을 늘 생각해주세요

## 2.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과 개정 배경

2.

2.1 아동중심 교육과정

2.2 놀이중심 교육과정

2.3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과 개정 배경

## 2.1 아동중심 교육과정

- 1920년대에 듀이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태동한 교육과정의 한 사조
  - 아동의 흥미와 자발적 활동이 교육과정의 중심: 아동 스스로 계획할 때, 스스로 배우기 원할 때 가장 잘 학습한다는 교육철학
  - 교사주도의, 교과 내용 위주의, 언어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닌 아동주도의, 경험 중심, 일상생활 중심의 교육 강조
  - 외부의 주입에서가 아니라 학습자 내면의 발현되고 이어지는 교육과정
  - 듀이의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점으로 평가됨
- 1980년대 미국 유아교육계의 발달에 적합한 실제(DAP)
  - 영유아는 능동적인 학습자, 아동중심, 경험중심, 과정 지향, 상호작용적 학습 과정을 통해 전인적 존재로서의 아동발달을 실현 강조(1987)
  - 연령의 연령별, 개인별, 사회, 문화적 적합성 기준과 실제(1997 개정)
- 김규수교수의 아동중심적 유아교육론(1996)
  - 아동중심적 유아교육과정이란 유아주도, 유아의 흥미와 요구 존중,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 개인차 존중의 교육과정이며, 교사는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중재 활동과 매개자로서 역할 주장

## 2.2 놀이중심 교육과정

- 교사의 교육과 놀이와의 관계 인식에 따라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실천 차이
  - '놀이를 도구화': 교사가 필요에 따라 놀이를 선별적으로 활용, 놀이 그 자체의 의미보다 놀이의 효과에 더 관심
  - '놀이를 이상화': 놀이의 도구적 기능만 강조되면 놀이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고, 교육적 놀이가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놀이 그 자체의 중요성 강조
  - 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놀이(curriculum-generated play)와 놀이에서 형성된 교육과정(play-generated curriculum) (Van Hoorn 외, 2007) 구분과 같은 맥락
  - 지금까지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은 교사주도의 생활주제 중심=> '놀이의 수단화'
- 놀이 자체로서의 가치 인정, 놀이 안에서 자연스런 배움 강조
  - 유혜령(2019): '유아는 배워야 할 지식이 있기 때문에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는 과정에서 그런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놀이가 배움의 수단이 된다'
-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지향
  - 놀이 자체의 순수한 교육적 힘 인정, 이를 기초로 아동 주도의 자발적 놀이 형태 추구
  - '놀이로부터 형성된 교육과정(play-generated curriculum)', 영유아의 주도권과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놀이를 통한 배움(playful learning)' 지향
  - 교사의 역할 중요: 영유아가 가진 자율적인 놀이 능력과 영유아의 '진짜 놀이'(서영숙, 김미소, 2018)를 통한 배움을 신뢰하고 실천하는 교사

## 2.3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과 개정 배경

-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개정 누리과정과 같은 방향으로
- 개정 누리과정 주요 내용
  - (아동 중심) 교사 주도적 교육에서 벗어나, 아동 주도적·자발적 놀이 권장
  - (놀이 중심) 일과에서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놀이를 통한 배움 강조
  - (현장 자율성) 계획 수립, 교수 방법 및 평가 등에서 교사 자율성 확대
  - (교육내용 적정화) 연령별 구분 폐지 등을 통해 3~5세가 경험하여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적정화(연령별 369개 세부내용 → 연령 통합 59개 내용)
-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교실혁명을 통한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 정부 과제 중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패러다임 전환' 국정 방향 반영
  - 세부내용 통합 축소: 교육과정 간략화로 과다 일일교육계획 작성, 주제와 놀이 일치 부담감 완화, 교사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지고 누리과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2.3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과 개정 배경

-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2007년에 공표된 제1차 표준보육과정의 아동관이나 학습관 유사함
  - '모든 영유아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자신이 발달과 경험을 스스로 구성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영유아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 놀이를 할 때, 그리고 주변의 환경을 직접 탐색하도록 격려될 때 관련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
  - 영유아는 대집단에서 교사 주도로 이끌려가는 수동적 경험보다 자신의 오감을 사용하여 실생활에서 직접 놀이할 때 가장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수반한다.' 등
- 왜 다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을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인가? 이전의 아동중심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
  - 교육철학자들이 수세기 전 아동의 흥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주장해왔고,
  - 방정환선생님이 어린이에게 경어쓰고 존중하자고 호소한 것이 98년 전인 1923년이고
  - 유엔아동권리헌장이 발표된지(1989) 30년이 더 흘렀고,
  - 아동중심적 유아교육론(김규수, 1996)이 나온지 20년도 더 지났고
  - 표준보육과정이 처음 제정될 기반 연구(2005)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 2.3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과 개정 배경

- 왜 다시 2019 개정 누리과정이나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중심·놀이중심인가?
  - 현장은 참고용인 월별 표준보육과정 활동자료집을 마치 교과서처럼 전국에서 같은 주제와 활동으로 운영되는, 여전히 교사 주도적 인식과 운영에 대한 반작용으로,
  - 마치 새로운 사상이나 현상이 주류로 자리 잡으려면 기존의 체제에 대해 강력한 반작용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 그리하여 교사가 보육과정을 계획하지 않아도(야) 되는가 할 정도로 강력하게 제시
- IT, BT 기술의 발달과 세계화 급변 시대를 사는데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해: 창의적인 문제해결력과 상호소통 능력을 갖춘 자율적인 인간상
-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 학령기 교육의 특징인 학습중심, 교사주도의 특징이 영유아기부터 스며드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 진짜 놀이를 살리는 교사로

- 코로나로 인해 디지털 격차는 2개월 걸려야 해낼(경험할) 수 있는 것을 2주, 심지어 2일만에 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 => **강요된 경험, 시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함.**
- 기술의 발전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요구함.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창의성, 협력, 혁신, 의사소통, 문제해결이 필수적인 기술이 됨**
- 영유아는 지극히 창의적이고 호기심 덩어리나 초등학교 후부터 그 능력 발달이 급격히 감소된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21세기의 중요한 기술인 이 창의성과 호기심이 발동되도록 영유아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진짜놀이어야 함
- 즉 이런 영유아주도의 놀이 경험의 축적으로 영유아가 현재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물론, 역량을 갖춘 미래시대의 동량으로 성장발달해갈 것임
- 그러므로 교사의 역할이 더 없이 중요함. 개정 누리(표준보육)과정은 교사가 영유아의 능력과 다양성, 권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놀이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그리고 즐겁게 몰입하도록 놀이지원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됨.
- 정부는 개정 누리과정 운영 참고자료로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사례집 5권**을 용역연구로 개발하여 소개하고 있음

## 놀이중심 누리과정/표준보육과정 활성화



2019 개정 누리과정  
안내서 3종



아이-누리 포탈(i-nuri.go.kr)에 소개된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5종



발간 등록번호  
11-1342000-000537-01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운영사례집



# 놀이, 유아가 세상을 만나고 살아가는 힘



\*출처: 아이-누리 포탈(i-nuri.go.kr)의 배움누리-현장지원자료 중 놀이운영사례집 중

### 3. 제4차 영유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실천 관련 질문들

3.1 현장지원 자료인 놀이의 이해(2019b)에서  
살펴본 질문들

3.2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와 같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들

### 3.1 개정 누리과정 현장지원 자료인 놀이의 이해(2019)에서 살펴본 질문들

- 유아가 주도하며 참여하는 놀이가 무엇인가요?
- 유아가 놀이를 반복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 어울려 놀지 않고 혼자 놀아도 되나요?
- 놀이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나요?
- 3세도 놀이를 하나요?
- 짧고 단순한 놀이도 놀이인가요?
- 유아가 즐겁게 뛰어놀기만 해도 될까요?
- 골고루 놀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죠?
- 바깥놀이에서도 배우나요?
- 한가지 놀이자료만 가지고 놀아도 되나요?
- 규칙없이 노는 것도 괜찮을까요?
- 놀이자료를 풍부하게 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 일상의 많은 자료를 어떻게 놀이로 확장하나요?
-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왜 중요한가요?
-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유아가 주도하는 것도 놀이인가요?
- 유아의 놀이규칙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놀이의 의미를 어떻게 읽나요?

### 3.1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와 같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들

-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 영유아 주도의 놀이가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보육과정을 계획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 종일 영유아가 놀고 싶은대로 놀도록 해도 되는가? 그러면 방임 상태로 여기지는 않을까?
  - 영유아의 놀이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은 괜찮은가?
  - 교사가 놀이를 제안하는 것은 괜찮은가?
  - 놀이, 일과, 활동이 구별될 수 있는가? 구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 또래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유아를 위해 교사가 개입해야 하나?
  - 특히 영아는 혼자 놀이가 많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는데, 그것을 다 기록하고 지원해야 하나?
  - 이전까지는 중요하게 다루어 왔던 일상생활이나 계절별 관련 주제 활동에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가?

### 3.1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와 같이 알아 보고 싶은 질문들

- **영유아 주도의 놀이란 무엇인가?**
  - 영유아의 흥미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선택 기준이 있는가?
  - 한 교실에서 아이들 간에 놀이 흥미나 요구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나?
  - 영유아가 요구하지 않아도 놀이 흐름에 따라 실내외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하나?
  - 영유아의 놀이과정에서 생긴 의문이나 관심거리를 중심으로 놀이(활동)이 계속 이어지도록 교사가 지원해주는 것은 괜찮은가?
  - 그렇다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프로젝트 중심 활동과 무엇이 다른가?
- **영유아 주도하는 놀이라도 금해야 하는 놀이가 있는가?**
  - 영유아가 원하는대로 놀이를 허용하기에는 안전이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령 허락되지 않은 공간에서나 시간에 놀이하기 원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싸움놀이(전쟁놀이)는 괜찮은가? 위험한 놀이는 어떤가? 모험놀이는?
  - 컴퓨터나 휴대폰 게임을 계속해도 되는가?
  - 놀이하지 않아도 되는가?

### 3.1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와 같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들

#### • 아동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운영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하는가?

- 풍부한 놀이감: 놀이감이 풍부하면 더 잘 노는가?
- 충분한 실내의 놀이터 공간: 흥미가 다를 경우 사용하는 놀이재료별로 비치하려면, 놀이를 잠시 멈추었다 하려면 놀던 그대로 두어도 될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 영유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 교사 대 아동 비율, 업무분장 적절한가?
- 원장과 교사 간의 공통된 이해와 협력: 교사간 아동중심·놀이중심 운영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나 판단이 다를 경우 어떻게 하나? 원장이 보육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하도록 요구하니 어떻게 하나? 원장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만든 작품이나 결과물을 가정에도 보내기 바라면 아이들에게 뭔가 만들도록 종용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 아동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와 지지: 부모들이 학습활동은 안하고 놀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면 어떻게 하나?

### 3.1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와 같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들

#### •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변화가 있는가?

- 영유아의 변화: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영유아가 더 행복하게 지내는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잘 배우는가? 배우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 부모의 변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감하는가? 부모의 요구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 교사의 변화: 일과 운영이나 안전 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는 없는가?, 이전 보육과정보다 운영하기가 더 쉬운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직업 만족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영유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더 커졌는가?, 교사로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이나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가?, 동료교사, 원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가?
- 어린이집 운영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 공간과 자원의 재배치가 더 자주 필요한가? 재정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가?

#### • 코로나 19는 개정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코로나 19 주의사항을 지키다 보니 영유아중심의 놀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가?
- 아니면 오히려 영유아중심의 놀이활동을 더 잘 하게 되는가?
- 별 영향이 없는가?



### 3.1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와 같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들

-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변화가 있는가?
  - 영유아의 변화: 영유아의 놀이나 활동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영유아가 더 행복하게 지내는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잘 배우는가? 배우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 부모의 변화: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체감하는가? 부모의 요구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가?
  - 교사의 변화: 일과 운영이나 안전 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는 없는가?, 이전 보육과정보다 운영하기가 더 쉬운가?, 교사로서의 전문성이나 직업 만족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영유아의 능력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더 커졌는가?, 교사로서 업무수행의 어려움이나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는가?, 동료 교사나 원장과의 소통과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가?
  - 어린이집 운영이나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 공간과 자원의 재배치가 더 자주 필요한가? 재정적인 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가? 지역사회의 자원을 더 자주 찾게 되는가?
- 코로나 19는 개정 표준보육과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코로나 19 주의사항을 지키다 보니 영유아중심의 놀이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가?
  - 아니면 오히려 영유아중심의 놀이활동을 더 잘 하게 되는가?
  - 별 영향이 없는가?

### 3.1 현장 교사, 학계 전문가와 같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들

-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는가?
  - 어른 존중 사상, 학문적 성과 중시, '빨리빨리' 선호, 결과 중심 평가 등 우리 문화의 특징은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배경이나 운영 방법과 대치되지 않는가?
  -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도 존중되어야 하지 않는가?
  -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과도한 아동중심·놀이중심이 아닌가?
  - 개정 과정의 강력한 반작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합을 향한 새로운 개정에 나서지 않을까?

## 4. 맺으며

- 달라진 보육과정이 실제 현장에서 자리 잡으려면
  - 보육교사가 **개정 의의와 운영 방법에 대해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난 보육과정 운영이 개정과정 운영과 같은 방향에 있는지 돌아보아 **변경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선을 위해 행동**해야 할 것이다.
  -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이라 해도 교사가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갈등과 고민에 기꺼이 부딪히지 않으면 교수 행위로 나타날 수 없다(윤은주 외, 2019).
- 최근 발표된 이영주박사의 학위논문 '놀이중심교육과정 실천역량 자기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2021)
  - 개정 표준보육과정을 운영하는 영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역량 규명
  - 교사 자신이 그 역량을 잘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자기평가도구
  - 연구 결과 '놀이 이해와 영유아 존중', '성찰과 반영', '관찰과 기록', '놀이 자료 및 공간 지원', '놀이 공동참여', '놀이 상황 지원', '민주적인 교실운영', '소통과 협력'의 8가지 역량을 재는 총 50문항의 자기평가도구 개발
- 현장교사의 능동적인 자기변화 노력으로 더욱 발전되기 기대함

## 영유아권리존중 교사로

- 놀이에서는 물론, 모든 과정(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영유아가 주인이자 주도자가 되도록 하는 교사
- => 영유아중심적인 교사
- ✓ **선생님이 하라 하면 일, 내(우리)가 하고 싶으면 놀이**

"우리끼리 의논해서  
우리가 원하는대로  
교실을 만드는 것,  
그건 신나는 놀이"



\*참고: 서영숙, 서혜정, 김진숙(2010). 보육교사용 아동청소년 권리 교육, 보건복지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THANK YOU

[youngss@sookmyung.ac.kr](mailto:youngss@sookmyung.ac.kr)

## 주제발표1

#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 1(사례발표)

김 영 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실천과 과제


서강어린이집 김영명 원장

## 주제발표2

#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과 과제 2(사례발표)

남 미 선  
백송어린이집 원장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실천과 과제



2021년  
3월

2021년  
6월

백송어린이집

영아, 부모, 어린이집이  
함께 만들어가는  
만 1세반 놀이

## 토론문1

#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실천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남 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영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의 실천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남 정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제4차 표준보육과정이 고시된 지도 햇수로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표준보육과정과 상당히 결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되는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한과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의 부족으로 기대만큼 활발하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영유아 중심의 의미'라는 주제가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제가 평소 고민하던 바를 더하여서 영아가 중심이 되는 보육과정을 더욱 공고하는 데 도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영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 실천에 걸림돌은 무엇인가?

영아반 보육교사들이 제4차 표준보육과정(영아중심, 놀이중심)을 실천하고자 할 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 영아의 금방 끝나는 짧은 놀이, 탐색처럼 흘러가는 놀이도 놀이인가?
- 매번 똑같은 놀이를 하는 영아를 그냥 두어도 되나?
- 각각 다른 놀이를 하는 영아에게 주제통합을 어떻게 접근하나?
- 영아가 놀고 싶은 대로, 흥미와 관심이 가는 대로 하게 내버려 뒀도 될까?
- 교사인 나는 정말 놀이를 지도하지 않아도 되나? 그렇다면 나는 육아도 유희와 뭐가 다른가?
- 영아가 상위 놀이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교사의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영아가 스스로 배운다는 게 사실일까?

이는 모두 **영아나 놀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신뢰'를 담지 못해 가지는 의문이라 봅니다. 우리는 놀이하는 영유아의 유능함에 주목하고, 놀이는 통합적인 경험이며 배움의 과정으로 충분하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영아 역시 적극적인 탐색과 놀이를 시도하는 주체로서, 활발하게 주변과 소통하며 관계 맺고,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영아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놀이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놀이경험은 어느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합적이며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끌어가며 스스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나간 서강어린이집 영아는 삶과 놀이가 어우러져, 함께 즐기며, 상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백송어린이집의 영아는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다양하게 시도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믿고, 놀이의 힘을 믿는 교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을 위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기보다 아이들의 관심과 욕구를 따라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2. 영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 실천을 위해 주목해야 할 표준보육과정 주요 특성

표준보육과정 고시문 하나하나가 영아중심·놀이중심 보육과정의 근간이 되고 실천을 위한 지표가 되어야 하나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위해 몇 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 ★ 표준보육과정 성격

나.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한다.

‘OECD교육 2030 학습개념들’에서 모든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과 사회의 안녕’이라고 합니다. 안녕을 위해 지식, 기능, 태도·가치 등의 역량은 수단이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아는 어떨 때 평안하고 행복 할까요? 영유아는 자유롭게 놀이할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합니다. 주제발표의 두 어린이집 영아들의 표정에서 행복을 읽었고, 영아의 놀이에서 통합적 기능을 통한 전인적 발달을 확신했습니다.

### ★ 구성의 중점

가. 영유아는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구성한다.

마.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모든 영유아는 타고난 기질, 유전적 특성, 발달 속도 등에 개인차를 지닌 존재이며 특히 영아시기는 개인차가 더욱 뚜렷한 시기입니다. 영아 개개인이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로 존중받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0-1세 표준보육과정의 6개 영역 40개 내용과 2세 표준보육과정 6개 영역 43개의 내용은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라 영유아가 주체가 되어 생활하며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주제발표의 두 어린이집 사례에서 각각의 자신의 흥미, 상황, 기질에 따라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노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영아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대전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 편성·운영

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서강어린이집의 충분한 바깥 놀이시간에서 영아 놀이경험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을 관통한 듯 보였습니다. 그 안에서 교사들이 통찰한 내용이 나 부모들의 피드백에서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 교수학습방법

다. 영유아의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는 누리과정에는 없는 내용으로 영아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영아는 언어적 방식과 비언어적 방식을 통해 의사표현을 시도하며, 개인의 기질과 특성에 따라 표현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교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언어표현에 미숙한 영아를 위해 교사는 비언어적 표현에 민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제발표에 등장하는 모든 교사는 기본적으로 영아의 의사표현 존중과 민감성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백송어린이집에서 영아가 손으로 꽃을 가리키자 교사가 들어 올려 자세히 보게 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 3.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전략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2019), 놀이하는 영유아와 함께 하기①(좋은 교사 되기 핸드북 II)에서 제시하는 영유아를 놀이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10가지 지원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영유아의 의도를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기**
- ② 교사의 의도대로 끌여가기보다 영유아의 놀이를 지켜보며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 ③ 영유아에게 선택권을 주고 **허용하기**
- ④ 일방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영유아의 주도성을 인정하며 **함께 놀이하기**
- ⑤ 영유아에게 질문하거나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하는 **의견 나누기**
- ⑥ 놀이 흔적이나 다양한 기록들을 전시하거나 이야기 나누기하며 **서로 공유**

## 하기

- ⑦ 놀이의 흐름에 따라 **시간과 일과의 융통성 갖기**
- ⑧ 놀이상황에 따라 공간의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고 공용공간을 융통성 있게 만드는 **공간의 변형**
- ⑨ 자료가 풍부한 환경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료에 대한 선택권을 영유아에게 주는 **다양한 자료 제공**
- ⑩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교사 간 협력하기** 등이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한 지원전략이지만 영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교사는 무엇보다 놀이를 이해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상호작용도 필요하지만, 교사가 더 가까이에서 영아의 놀이를 지켜보고, 참고 기다리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그 놀이경험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고 꼭 필요한 다음 단계의 지원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 4. 영아중심·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실천을 위해 그 밖에 우리가 고민해야 할 내용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은 영아가 일상의 지속적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스스로 탐색하고 주도하는 놀이경험을 말합니다. 특별한 퍼포먼스도, 놀이행사도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놀이경험이 배움을 만든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유아들한테나 기대할만한 결과물과 그럴듯하게 포장된 활동은 방향성에 맞지 않습니다.

교사의 지나친 수고나 과중한 업무부담은 진정한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만들 수 없습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영아도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되어야 영아도 존중되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너무 힘들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물적, 인적) 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각 어린이집 보육과정의 책임자는 원장입니다. 이전과 달리 함께 만들어 가는 보육과정에서 원장의 역할과 책임은 매우 커졌습니다. 각 교실에서 보육교사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평가하며 환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원장은 분명한 운영 방침과 철학을 설정하여 교사들이 그 방향성에 맞게 보육과정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이 보육과정을 운영하며 가지게 되는 어려움에 답을 주

고 직접적인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문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협의하는 교사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개정 표준보육과정은 이전 국가 수준의 표준보육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의 공통성도 강조하지만 지역, 구성원, 어린이집의 개별 수준을 고려한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라고 단정 지어 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각 어린이집에 가장 적절한 보육과정을 꾸리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수준에서 현장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육현장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자율성을 부여받은 것이므로, 자신감을 가지고 영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중심이 되는 보육과정을 마음껏 실천해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토론문 2

###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실천과 과제」에 대한 토론문

이 유 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실천과 과제」에 대한 종합토론

이유미 (가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 I. 들어가며

우선 이번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영유아중심의 의미’를 들려주신 서영숙 교수님, 개정 표준보육과정의 영아반 실천 사례를 들려주신 두 분 발표자분들과 그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동중심실천학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살펴보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일명 영유아중심 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으로 ‘잘 놀아야 잘 자란다’는 표어가 시사하듯 2019 개정누리과정과 같은 맥락에서 개정되었다.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방향을 예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개정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에서 모두 놀이를 화두로 삼으니 영유아 보육현장에서 이제 놀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바야흐로 놀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사회에서 아동의 놀이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전달한 권고사항에 기인한다. ‘모든 아이들은 맘껏 쉬고 놀아야 한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를 법적 근거로 2013년부터 시작된 국내 아동의 ‘놀 권리’ 실천 운동은 다양한 놀이환경 조성 및 놀이관련 자자체 활동을 급속도로 확산시켰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의 아젠더가 놀이로 귀결되고 오늘날, 영유아의 놀이가 또 하나의 ‘공해’가 되지 않도록, 일상의 놀이를 홍보용으로 둔갑시키지 않도록, 영아의 삶과 괴리되지 않는 진짜 놀이가 살아나는 보육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편해문(2018)에 따르면 좋은 놀이터는 관리보다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출발하는가, 아닌가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을 지향하는 우리들 역시 꼭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이 놀이의 출발에 있어 ‘영유아를 중심에 놓고 있는가’의 여부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영유아중심의 의미’인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통찰력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발표를 들으며 인상깊었던 부분은 우선 영아반 놀이실천을 부모-가정과 연계하셨다는 점이다. 영아는 몸이 어린이집에 거주하면서도 '가정'이라는 공간의 잠재적 지평을 끌어들이어 그곳에서의 경험을 표현하므로 가정과 어린이집을 넘나드는 놀이를 한다(최은정,2019). 그런 점에서 가정연계 놀이활동은 영아의 생활세계를 깊이 공감하고 이를 놀이로 지원하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두 기관 모두 영아의 적응과정부터 세심하게 주목하셨고 이를 위해 부모와 가정 자원을 적극 활용하셨다. 영아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와 함께 충분히 지내기(발표1), 사진을 보며 부모와 함께 있는 느낌을 주는 환경 제공하기(발표2) 등은 영아중심 보육 실천과 가정연계 부모참여 활동 간의 연관성을 새삼 깊이 느끼게 한다. 특히 발표2에서 부모님이 교실에 왔을 때 놀이했던 관찰 기록을 보고 이후 교사가 영아와 같은 놀이를 하였다는 내용은 영아의 개별적인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한 교사의 일지가 이후 영아중심 보육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 속에서 영아의 놀이성을 발견하고 놀이에 재미를 더해주려는 교사의 노력에 깊은 감동을 느낀다.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실천에 있어 교사의 역량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발표자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아의 놀이에 비해 단순하다는 이유로 영아의 탐색을 놀이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 속에서도 왔다갔다하는 반복 행동 속에서 영아의 공간탐색 놀이를 읽어주는 교사, 손등에 올라온 개미를 보며 긴장하는 영아의 흔들리는 손끝과 눈썹을 결코 놓치지 않는 민감한 교사, 유아의 흥미를 알아차리고 겹벚꽃잎을 뿌려주는 교사, 나무 뒤에 숨은 영아를 보고도 모른 척하며 놀이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교사가 있어 영아중심 보육실천의 현장이 더욱 기대된다.

본 발표 내용 중 토론자의 시선을 사로잡은 명 장면이다.



놀이가 무르익으면 교사와 아이들의 마음이 통하는구나..를 느끼며 이제 본 토론자는 보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하며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더불어 영아중심 표준보육과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육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교사, 원장, 부모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지 교사교육자의 입장에서 제안드리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 II. 발표내용에 대한 몇 가지 질문

1) 영아중심, 놀이중심 개정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아반 보육을 진행하며 느낀 변화와 교사로서의 딜레마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다.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적용 초기이므로, 영아교사분들이 영아중심, 놀이중심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발표자분들의 기관에서도 실천하며 느끼셨던 어려움이나 딜레마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의 발제 내용에서는 교사의 어려움이나 딜레마가 보이지 않기에 부탁드립니다. (발표1, 2 공통)

2) 팬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코시국’ 이기에 어떤 누구도 코로나로 인한 제약사항에 의구심을 발설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부모나 외부인의 참여를 극히 제한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나 활동으로 보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발표(2) 사례의 가족사진 놀이도 그런 맥락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1) 사례에서는 영아의 적응과정에 부모를 참여시킬 것인가? 안전한 방역을 위해 제한한 것인가? 에 대해 상당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 고민의 근간에 있는 보육 철학이 과연 무엇인지 궁금하다. 더불어 발표자는 그런 고민을 어떻게 이후 풀어가셨는지도 궁금하다.

3) 발표(1) 사례에서 신입 영아의 안정적 적응을 위해 마련하신 ‘어린이집 전체적으로 적응과정 점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인지 궁금하다. 문구 그대로 영아의 적응 문제를 어린이집 전체적인 차원에서 살피주신다면 영아는 물론 부모님의 입장에서 매우 감사한 일이겠지만 업무가 많은 보육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본 발표에서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적응기간 중 영아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위해 사진을 찍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깊은 울림을 준다. 그러나 한편 부모님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 때가 자녀의

하루일과를 가장 궁금해하고 알고 싶은 시기일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학부모와 어떻게 조율하며 이견을 좁혀가셨는지 발표를 통해 구체적인 과정이 소개되길 기대한다.

4) 발표자는 기존의 표준보육과정이 반복보다 새로운 활동을 제시했고 그로인해 영아의 놀이가 실제 놀이와 괴리되었다고 지적하셨다. 일정 부분 동의하나 영아와 실제 놀이 간 괴리가 정말 기존 표준보육과정만의 탓일지..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정누리과정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반 교실에서는 개정누리과정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표준보육과정의 교육적 효과도 개정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이 원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적용하는 교사의 실천적 지식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 원내 교사교육을 진행하셨다면 그 내용에 대해 추가설명 요청드린다.

5) 끝으로, 본 학술대회의 주제어인 '영유아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하다.

'아동중심'교육은 아동의 흥미와 관심을 존중하고 그것을 교육내용 선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이론에 기초하여 발전한 개념이다. 그렇다면 듀이가 강조하듯 아동의 흥미와 관심에서 출발하는 것, 능동적인 학습자인 아동의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동중심'의 본질적인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구성하는 '아동중심'의 의미를 살펴본 정선아(2004)에 따르면 현장교사들은 능동적인 학습자 아동의 개별성보다 아동이 가지는 문제상황이나 요구에 대처하는 것으로 '아동중심'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적응 초 활동을 거부하며 혼자 있던 영아의 모습을 '문제'로 여기고 교사가 부모와 소통하며 개입, 결국 교사가 제한한 놀이에 서서히 참여하게 된 사례를 소개하는 발표(2)내용과도 맥락적으로 일치한다. 더욱이 영아의 놀이 참여를 위한 교사의 진심과 노력은 이해되나 왜 꼭 밀가루 놀이여야 했을까.. 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다.

'영유아 중심'에 대한 개념상 혼선은 발표(1)에서도 보여진다. 비록 적응과정 중 문 밖을 향한 영아로 인해 자연스럽게 연결된 바깥놀이지만, 바깥놀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시다보니 자칫 '영아중심 놀이=바깥놀이'로 오인될 소지도 없지 않다.

따라서 본 학술대회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영유아 중심'의 의미가 무엇인



지, 예시를 통해 단서를 주며 이후 우리로 하여금 내내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 Ⅲ. 영아중심 보육실천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영아중심 보육 실천 사례를 통해 나타난 발표자분과 교사분들의 역량과 노력에 깊은 감동을 느끼며 교사교육자로서 영아중심 표준보육과정 실천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영아의 놀이 지원에 대한 교사의 반성적 성찰이 매 순간 요구된다.

‘영아중심’ 보육의 핵심은 적응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인 영아의 개별성에 대한 존중이다. 그러나 집단보육 상황에서 이는 늘 딜레마를 유발한다. 책임감없이 개별성을 인정하면 자칫 방임이 되기 쉽고, 방임교사라는 시선을 우려해 영아의 개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영아중심 보육으로의 진보는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의 성찰은 길이 없는 곳에서도 매 순간 목적지를 잃지않게 하는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부모를 의식하며 분산되었던 교사의 시선이 영아에게 온전히 집중될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영아중심 보육 방향을 제시하는 키맨으로서 기관장의 역할을 제안한다.

발표를 통해 보여주신 교사의 고민처럼 교사들은 부모의 평가에 대해 늘 의식을 할 수 밖에 없다. 영아 놀이에 있어 단순하고 반복된 행동의 의미를 알면서도 부모가 본다고 생각하면 왠지모르게 조심스러움을 느끼게 된다.

*“그랬을 때 너무 맨날 똑같은 놀이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아이들이 그 놀이를 좋아하니까 그 놀이가 진행되지만 상대적으로 까페에 보여주고 그럴 때...*

*아이들의 놀이가 반복되니까 그게 좀...” (K 교사)*

따라서 기관 차원에서 학부모와 영아중심 놀이중심의 보육철학을 공유하여 교사가 온전히 영아에게 시선을 집중하여 놀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동반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실천에 있어 외주화, 교재화의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교사 지식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이번에 발표를 하신 두 기관만 해도 이미 오래전부터 영유아권리 존중이라는 보육철학에 입각하여 자체 교사교육을 실시, 영아중심 놀이중심 보육을 시도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기관마다 상황이 다르다보니 자칫 이번 보육실천도 상업성이 가미된 교재와 전문업체 지원에 의한 외주화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정형화된 교재와 교구는 놀이를 가장한 또 하나의 과제이다. 따라서, 기관 주변의 환경을 활용하여 영아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사의 힘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학습공동체 등과 같은 지식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거창하지는 않지만, 영아의 일상이 녹아있는 실제 놀이 사례를 공유하며 교사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영아중심 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실천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영아 놀이지원에 대한 부모의 신뢰이다. 보육파트너로서 어린이집-교사-부모 간 신뢰의 회복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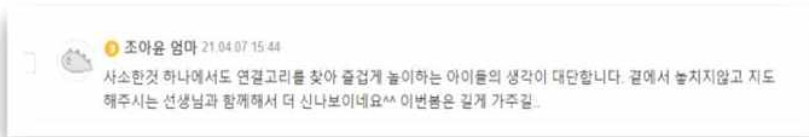
양질의 보육은 형식적인 제도보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토론자의 평소 생각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시작된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 풍조, 이를 기회삼아 부모의 표심을 모으기 위한 만들어진 제도(ex: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익명에 의한 구청 민원 접수시스템 등)는 교사의 보육활동을 제한하는데 한 몫을 한다. '알 권리'와 '참여권'을 빙자하여 부모의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과 처벌을 공공연히 제도화하고 있다.

아동중심 보육실천은 아동의 흥미에 관심을 갖고 아동이 성장하는데 호기심을 가진 교사에 의해 가능하다(정선아, 2004). 이때 흥미(interest)는 inter(사이)+ esse(자아)의 혼합어로 자신과 주변 사물(상황)이 서로 관계있다고 생각될 때 흥미가 더해진다(Dewey, 1910).

그렇다면 이런 원리를 교사에게 대입해보자. 교사가 '영아의 관심거리와 성장'에 흥미를 느끼려면 교사가 자신과 영아 간의 관계성, 즉 영아가 자신에게 의미있는 관계라고 인식될 때 영아에 대한 관심과 영아의 변화가 눈에 들어올거라 생각된다. 그러나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불신으로 전후사정도 확인하지 않은 채 민원을 접수하고, 또 이를 받아주는 상황에서 과연 교사와 영아가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언제까지 부모는 보지말고 오직 영아만 보라고 부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영아중심 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실천에 앞서 교사의 영아 놀

이지원에 대한 부모의 신뢰가 회복이 급선무다. 교사가 아동의 흥미를 포착하고, 흥미가 확장될 수 있는 상황을 적절하게 제공할 때 아동중심 교육의 성공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Reggio Children, 2002) 이제는 학부모가 교육파트너로서 보육교사가 지닌 '영아에 대한 흥미'를 알아차리고 영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확장되도록 교사를 향해 신뢰와 지지를 보내야 할 때다. 아래와 같은 부모의 응원과 지지의 시선이 영아중심 놀이중심 표준보육과정 실천의 동력이 될 것을 믿는다.



#### IV. 나가며

지금까지 우리는 영아를 중심에 두려고 노력하는 어린이집과 교사들의 영아 반 놀이실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보육교사는 결코 완성된 존재, 완전한 인격체는 아니다(조선경, 2015). 다만 좋은 보육을 위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는 존재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아를 사랑하듯 영아를 사랑하는 교사를 향해 지켜보는 우리들도 이젠 흠을 덮어주고 햇빛과 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실천적 노력을 지지하는 사회적 무드 안에서 영아중심을 지향하며 놀이를 통해 영아가 잘 자라도록 돕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더 많은 기관에서, 더욱 창의적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

## 연구윤리

### 연구윤리 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 제2조(적용대상)

본 규정은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1.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이중게재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인위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이중게재"는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간하는 경우 또는 연구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기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말한다.

##### 제4조(윤리규정 서약)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의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 발표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5조(연구자 윤리)

연구자는 논문의 투고 및 출판 시, 다음 각 호의 연구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 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업적을 인정받는다.
3. 논문이나 기타 출판 임직의 저자(역자)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 기여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4. 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하여 게재하는 경우 학생이 제1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으로 명기하되, 투고 시점에 소속이 변경된 때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기한다.
6.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 외적인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주신 분들께 사의(acknowledgement)로 그 내용을 밝힐 수 있다.
7. 연구논문과 관련된 사항을 각종 인쇄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9. 인간 및 인체유래물의 연구 또는 배아나 유전자 등을 다루는 연구는 원칙적으로 IRB 승인을 권장한다. IRB 승인을 득한 경우 해당 논문에 이를 명기한다.

#### 제6조(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회)은(는) 다음 각 호의 편집위원 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 결정 등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심사과정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편집과정 참여자를 관리 감독한다.
3. 편집위원(회)은(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함으로써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편집위원회는 명백한 오류, 왜곡된 결과 출판시 즉시 수정하고 저자의 소속기관에 이를 알릴을 원칙으로 한다.

#### 제7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심사윤리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공정성.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에 의거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사적인 관계에 따라 논문을 통과시키는 행위,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심사자 본인의 학술적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2. 연구자 존중. 심사위원은 해당 영역의 전문가로서 연구자의 인격과 학술적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3. 비밀준수.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심사 대상 논문의 내용을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않는다.

#### 제8조(연구윤리 요약서 등)

논문 투고 시 대표저자(교신저자 포함)는 논문표절검사 결과와 함께 '연구윤리 요약서'를 작성하여 투고논문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 제9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1. 연구윤리위원회는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2.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해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절차**

**제13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그 회원으로 하여금 문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2. 제보자는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논문심사자는 심사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의심이 가는 경우 확고한 증거가 없더라도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4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5조(연구윤리위반 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수행, 연구결과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6조(연구윤리 검증원칙)

1. 부정행위 사실 여부 입증책임은 본 학회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할 경우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3. 본 학회의 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예비조사)

1. '예비조사' 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4.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8조(본조사)

1. '본조사' 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제19조(판정)

1. '판정'은 본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조사 착수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한다. 단, 이 기간 내 조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화하여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한다.

#### 제20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5장 후속조치

#### 제21조(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①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불허
  - ②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 ③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④ 회원자격의 박탈 또는 정지
  - ⑤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②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④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파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22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 작성하여 지체없이 관련자(제보자, 피조사자 등)에게 통지한다.

#### 제23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4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25조(기록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참여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4일 부터 시행한다.

2021년 6월 11일 발행

발행인 안지혜

발행처 한국아동중심실천학회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42, 620호 / 전화: 010-5518-6109)

홈페이지 : <http://www.child-centered.co.kr>

E-mail: [child-center@daum.net](mailto:child-center@daum.net)

---

